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장 등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유아교육법」이 개정(법률 제19737호, 2023. 9. 27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 원장 등 교원이 학업, 보건, 인성 등에 관하여 조언, 상담 등의 방식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또한 학급 규모에 따른 보직교사 수에 관한 규제를 없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교육감이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·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학급수 규모에 따른 보직교사 수 제한을 삭제(안 제23조)

나.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의3 신설)

다. 생활지도 관련 법률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25조의2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- ④ 유치원에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으며, 보직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.

제23조의3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3(순회교사의 배치 등) 교육감은 둘 이상의 인근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시·도 교육행정기관에 둘 수 있으며,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.

제25조의2(유아생활지도) ①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학업, 보건 및 안전, 인성 및 대인관계,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구,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-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,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) ① ~ ③ (생략) ④ <u>유치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. 다만,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.</u> 1. <u>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: 1명</u> 2. <u>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: 2명</u> 3. <u>12학급 이상의 유치원: 3명 이상</u> ⑤ <u>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정하고, 유치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원장이 정한다.</u> <u><신설></u>	제23조(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유치원에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으며, 보직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.</u> <u><삭제></u> <u>제23조의3(순회교사의 배치 등) 교육감은 둘 이상의 인근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시·도 교육행정기관에 둘 수 있으며,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.</u>

<신 설>

제25조의2(유아생활지도) ①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학업, 보건 및 안전, 인성 및 대인관계,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구,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,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444